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는가”라는 물음에 솔직히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 도서관이란 관점에서 현재 학교도서관을 보면 그런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 같다. 하지만 도서관 앞에 붙은 ‘학교’라는 단어가 걸린다. 학교도서관은 분명 도서관이기에 도서관자료를 구비하고 그 자료를 이용자에게 대출반납하며 다양한 책 읽기 관련 행사를 운영하는 기본역할을 두고 보면 현재 학교도서관은 나름 잘 운영되는 것 같다. 하지만 사서교사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확신에 찬 말투로 “그렇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서관법」 제38조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법」이 제시한 학교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1항에서 4항까지는 도서관의 보편적인 역할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하며, 이용자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본 역할은 1항부터 4항까지 해당이 된다. 하지만 5항은 다르다. 학교도서관의 특수성을 잘 표현한 5항의 주제어는 교육이다. 제5항에서 명시한 독서교육과 협동수업 등 ‘정보 활용교육’ 이야말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잘 설명한다. 학교도서관이 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가 바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독서교육과 정보활용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는 전담인력의 성격에 따라 제약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3항은 단위학교이 모든 교육활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만이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할 독서교육, 정보활용 교육은 교사만이 할 수 있기에 현재와 같은 사서교사, 담당교사(계약직)사서로 나뉜 전담인력의 이원화체제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담당교사가 아무리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교과교사의 입장에서 독서교육을 접근하지 문헌정보학에 기반을 둔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도서관의 제 역할은 인적지원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말 그대로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07년 12월 제정된 이 법이 학교도서관 진흥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 조직이든 다 부정한다. 왜 일까?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어떤 조항 때문에 오히려 진흥을 막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개정이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이다. 이 조항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의 성격을 규명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전담부서와 사서교사 등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두어야 한다’ 해도 전담부서와 인적자원이 배치가 될까 말까하는데 두어도 그만이란 임의조항은 예산 등의 문제로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확보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잘 갖춰놓은 도서관을 방치할 수 없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외한 보편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의 비정규직 사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이르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는 14%이다. 사서교사든, 사서든 학교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법적 강제성을 두고 배치해야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에 사서교사의 안정적인 배치는커녕 비정규직 사서만 배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 때문이고, 학교도서관계에서는 늘 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적자원 역할의 혼재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인적자원 배치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지 5년 차이다. 그 사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은 다양하게 혼재되었다.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비정규직)사서, 학교도서관 도우미(사서실무사) 등 자격과 지위도 매우 다양해졌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의한 「도서관법」 제38조(업무)에서 도서관의 보편적 기능(1~4항)과 학교도서관만의 교육적 기능(5항)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의무배치만 지속되었더라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은 이렇게 혼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도서관의 보편적 기능은 (비정규직)사서가, 독서교육 중심의 교육적 기능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맡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2012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자료집계시스템 학교도서관 현황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을 분석하면,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서울특별시 1,316개교 (비정규직)사서 974명 가운데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자격의 최소한 조건인 준사서 자격소지자는 301명(31%), 준사서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사서는 284명(29%)이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해야 얻을 수 있는 2급 정사서 자격 소지자는 389명(40%)이다. 자격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사서의 1/3이 무자격이라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 인적자원배치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자격 사서를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도 없는 ‘사서실무사’란 명칭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범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무자격 사서에게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을 공식적 사

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단체교섭 직종별 협약'을 진행 중인 사서직 노조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상 단협안 2조¹⁾를 통해 무자격 사서에 대해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으로 모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범위까지 모호하게 정의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의한 용어인 '사서교사 등'은 실기교사, 사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의 주체를 사서에까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오해를 부른다. 《학교도서관저널》 9월호를 통해 최초 제시한 경기도교육청 대상 사서직 노조 단협안은, 현재 진행 중이기에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영역 경계를 무너뜨린다.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5항 : 학교교과과정 속에 학교도서관 행사 및 책임기 수업을 년 10시간 의무 배당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교직원회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경기도 사서직노조 단협안 10항 :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 재량, 개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 후 교실, 교사 결원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교원과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한다.

위 단협안처럼 책 읽기 수업 시수 의무배당과 창의체활동, 동아리 활동, 교사 결원 대체 수업까지 교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공식적으로 요구할만큼 현재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의 업무영역은 혼란스럽다. 이런 이유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구체화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서 제시한 사서교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자격과 지위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서와 사서교사를 '사서교사 등'으로 통합했기에 현재와 같은 업무범

위가 혼란하게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향

학교도서관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인적자원 배치와 같이 정말 필요한 항목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인적자원 구성의 자격과 지위에 따라 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야 하지만 모호하게 '사서교사 등'으로 정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 전담인력 배치를 강제조항으로 바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다양한 인적자원 구성과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가운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공감대이기에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한 세부사항 제정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그 이름에 맞도록 학교도서관 진흥에 기여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글 | 소 병 문
우신고등학교 사서교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처장
paul7493@hanmail.net



1) (비정규직사서직 노조의 서울특별시, 경기도교육청 대상 단협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도서관저널》 9월호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서직 노조 단협안 2항은 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사서업무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칭은 '사서'로 통일한다.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로서 '사서교사'의 보조업무는 '사서실무사'로 한다로 제안했다.